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147
----------	-------

발의연월일 : 2026. 1. 19.

발 의 자 : 전용기 · 박선원 · 박정현
 북기왕 · 박성준 · 박 정
 정준호 · 민병덕 · 이연희
 김남희 · 전진숙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2·29 여객기 참사에서 부부가 동시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해 과도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이는 배우자 쌍방이 이시(異時)사망하는 경우와 달리, 동시사망의 추정(「민법」 제30조)이 적용될 경우 배우자 상호간에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임.

동시사망의 추정은 상속 관계에서 사망 시기의 차이에 따라 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으나,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그 구체적인 선후를 입증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입된 제도임. 그런데 부부의 동시사망이 추정된다는 이유로 배우자상속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오히려 상속인으로 하여금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사망 시기를

다투도록 내몰게 되어 제도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임.

이에 동시사망의 추정의 경우에도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 유가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부부 동시사망 시 상속공제) ①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민법」 제30조에 따라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를 말한다)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민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먼저 사망한 것으로 보아 아내가 같은 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 제1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제받게 되는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2. 「민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먼저 사망한 것으로 보아 남편이 같은 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 제1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제받게 되는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의 신청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9조부터”를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제18조의3, 제19조부터”를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부 동시사망시 특별상속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9조의2(부부 동시사망 시 상속공제) ①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민법」 제30조에 따라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를 말한다)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u> <u>1. 「민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먼저 사망한 것으로 보아 아내가 같은 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 제1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제받게 되는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u> <u>2. 「민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먼저 사망한 것으로 보아 남편이 같은 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 제1</u>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